

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밀산업육성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밀산업의 범위) 법 제2조제4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"이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
1. 밀 종자업
2. 밀의 건조·보관 등에 관련된 산업
3. 밀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산업
4. 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

제3조(실태조사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
2.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
3. 밀, 밀가루, 밀 가공품의 가공·제조·유통·판매 현황
4. 밀의 생산비,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
5. 그밖에 밀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

2. 수시조사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제4조(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「밀산업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
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3.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5. 밀 생산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③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지정번호 및 지정일
2. 교육훈련기관의 명칭
3.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
4.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
5. 교육훈련 분야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

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조(계약재배 관련 우선 지원 대상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재배를 지원할 수 있는 밀산업종사자의 요건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재배 장려와 관련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당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2. 농약 안전사용 위반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
3. 전년도 계약재배 위반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, 단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재배를 이행할 수 없었던 농가는 제외

제6조(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방법 등)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밀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7조(단체의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)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, 지도·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제8조(비축사업의 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사전약정을 체결할

수 있다.

1. 법 제12조에 따라 생산·유통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밀을 재배하는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

2.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

3.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파종기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1. 비축물량

2. 비축가격

3. 제5조에 따른 품질검사 기준

4. 수매시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비축사업의 위탁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국산밀 등의 기준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,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별표1과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,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(제10조 관련)

1. 국산밀

- 가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밀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밀
- 다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밀
- 라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밀
- 마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7호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밀
- 바. 「학교급식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춘 밀
- 사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산밀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밀

2. 국산밀가루

- 가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밀가루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밀가루
- 다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밀가루
- 라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밀가루
- 마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7호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밀가루
- 바. 「학교급식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춘 밀가루
- 사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산밀가루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밀가루

3. 국산밀가공품

- 가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밀가공품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밀 또는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밀가공품
- 다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밀가공품
- 라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밀가공품
- 마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7호의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밀가공품
- 바. 「학교급식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갖춘 밀가공품
- 사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산밀가공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밀가공품

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·단체명		설립연도 년 월 일	
	대표자명			
	주소 또는 소재지		전화번호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		
교육훈련 분야 (주요 과정명 3개 이내)	1.			
	2.			
	3.			

「밀산업 육성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.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. 밀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) 1부	수수료 없음			
처리절차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접 수 농림수산물 교육문화 정보원장	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농림수산물 교육문화 정보원장	적 합 농림수산물 교육문화 정보원장	지정서 작성 농림수산물 교육문화 정보원장	지정서 발급

제 호

교육훈련기관 지정서

- 명 칭:
- 대표자:
- 소재지:
- 교육훈련 분야:

「밀산업 육성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

직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식량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-1836